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8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이종배·박덕흠·성일종

이성권 · 김재섭 · 김성원

강승규 • 김예지 • 김용태

엄태영 · 이종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,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,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,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.

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 함(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제25조(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)		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6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5의2. (생 략)	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5의3.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		
	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		
	<u>사항</u>	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	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		